

KMI 동향분석

VOL.223
 2026 JULY

발간년월 2026년 5월(통권 제223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감 수 마창모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중국 「어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jmh@kmi.re.kr/051-797-4571)
 김태일 중국연구센터장
 (ktizorro@kmi.re.kr/051-797-4613)

2025년 개정된 중국 「어업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2026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 수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WTO 수산보조금 협정 등 국제 어업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국제 규범 수용 확대와 수산자원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개정된 중국의 「어업법」은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중국 어업관리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개정된 「어업법」은 중국 어업관리 패러다임이 생산 확대 중심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관리·집행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포획어업 분야에서 어업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연근해 어업의 경우 총허용어획량(TAC), 어획능력 통제, 조업일지 기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결합되면서 투입통제(input control)와 산출 통제(output control)를 연계한 자원기반 어업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기존의 허가 중심 관리 체계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제5장(章) 「감독 및 관리」는 중국 어업에 대한 현장 단속, 승선 검사 등을 포함하는 집행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중국의 어업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위법행위 신고 권리와 관계 기관의 조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고 기반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벌금 상한의 대폭 상향, 유통 단계까지 포함한 규제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세분화 등을 통해 사후 처벌 중심 체계에서 사전 예방과 억제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되었다.

중국 「어업법」 개정은 국제 어업 규범과의 연계된 원양어업 관리체계 변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자국 법체계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어획-항만-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추적성(traceability)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수산물 무역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인증, 추적성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함께 약 2,500~3,000척 규모의 세계 최대 수준의 원양어선단에서 생성·추적되는 조업 데이터는 향후 국제 수산자원 평가 및 국제어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어업법」은 원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지원하면서 주변 인접국과의 어업 협력을 강화하여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원양어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 수산물 시장과 해외 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어업관리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중국이 기존의 수산자원 보호, 데이터 기반 관리, 공급망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어획량 관리, 어획물 추적성, 데이터 기반 자원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자원관리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다만 연근해 어업의 경우 조업정보와 어획정보가 주로 안전관리와 행정관리 중심으로 수집·활용되고 있어 자원평가, 어획량 관리, 공급망 관리 등과 연계된 통합적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획정보의 수집·관리·활용 체계 간 연계성 강화와 어획보고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체계의 단계적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어업법」 개정 배경

■ 중국 「어업법」 전면 개정, 2026년 5월부터 시행 예정

- 중국 「어업법」은 1986년 제정 이후 포획어업, 양식어업, 수산자원 보호, 어업관리 전반을 규율하는 중국 수산분야의 기본 법률로 기능해 왔음¹⁾
- 이번 2025년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단순한 조문 보완을 넘어 기존 어업관리 체계를 수산자원 보호와 데이터 기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중국 「어업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국제 어업 거버넌스 및 국내 어업관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중국 수산업 구조 변화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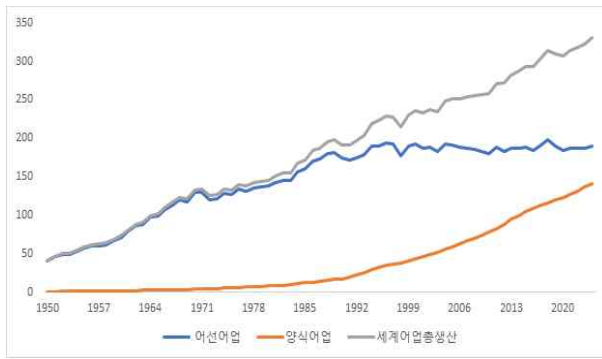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성장하였으며 수산업 생산 구조는 포획 어업보다 양식 어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음
 -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중국 전체 수산물 생산은 8,900만 톤이고, 이중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85% 수준에 이룸
- 중국 수산업의 생산 구조 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 연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높은 이용 강도로 인해 자원 감소와 생태계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양식업의 확대에 따라 수질 관리, 질병 대응, 종자 관리 등 지속가능한 양식 생산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어선어업 중심의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 확대 중심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자원 보호와 관리·통제 중심의 정책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졌음²⁾

1) 동 법은 중국 영토 및 관할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양식·포획·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하며, 원양 어업과 외국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어업 활동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을 통해 관리·규율하고 있음

2) 어선어업은 중국의 해면 포획어업을 어선어업으로 번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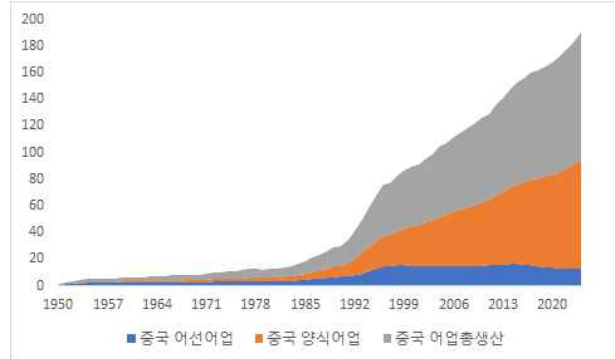
〈그림1〉 세계 어업 생산량 추이(1950~2024)

단위 : 백만 톤



〈그림2〉 중국 어업 생산량 추이(1950~2024)

단위 : 백만 톤



자료 : FAO Fishstat J(2025) 활용, 저자 작성

■ 국제 어업 거버넌스 변화와 중국의 규범 수용 확대

- 국제적으로 IUU 어업 근절과 해양환경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국 역시 글로벌 어업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음
- (WTO 수산보조금 협정) IUU 어업 및 과잉어획된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수산보조금 통보 의무를 통해 어업 활동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항만국조치협정 가입) 2025년 중국은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³⁾에 가입함으로써, 항만국으로서 IUU 어업 대응 관련 의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IUU 어업에 가담한 외국 선박의 항만 이용 제한, 불법 어획물 하역 금지 등의 관련 내용을 법체계에 반영함
 - *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이하 PSMA)이란 IUU 어업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2009년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채택되었고 2016년에 발효됨. 2026년 기준 80여 개 당사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2016년 4월 가입함
- 그 외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⁴⁾과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이하 RFMOs)⁵⁾ 규범 강화 흐름⁶⁾도 중국의 법제 정비를 촉진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항만국조치협정의 공식 영문 명칭은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임

4) 동 협정의 공식 영문 명칭은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임. 약칭은 'BBNJ 협정'임

5) 중국은 참치류 RFMO인 ICCAT, IOTC, WCPFC, IATTC 뿐만 아니라 NPFC, SPRFMO, CCAMLR, NAFO, NPFC 등 주요 RFMO에 가입하여 다양한 공해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6) 최근 RFMO에서는 공해 어업, 전재(transshipment), VMS/AIS, 작업일지, 항만국조치(PSMA), 노동추적성 규범 등 보존관리조치 이행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개정 「어업법」의 핵심 변화 : 어업관리 체계의 재설계

■ 수산자원 보호·집행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 2025년 개정 「어업법」 총칙에서 어업 생산 확대 중심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관리·집행 중심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어업 안전, 데이터 기반 관리, 국제 거버넌스 참여 등이 명문화되면서 「어업법」은 단순한 산업법을 넘어 종합적 관리 법제로 변화하였음
- 법률 체계는 기존 6장 체계에서 제5장 “감독 및 관리”를 신설하여 7장 체계로 확대되었음

〈표 1〉 중국 「어업법」의 신규 대조

2013년	2025년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양식업	제2장 양식업	
제3장 포획업	제3장 포획업	
제4장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	제4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5장 감독 관리	〈신 설〉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제7장 부칙	

자료 : 저자 작성

■ 포획어업, 총허용어획량·어획능력·데이터를 결합한 자원기반 어업관리체계 구축

- 제3장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나타난 영역으로, 어획량·어획능력·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산자원기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함
- (TAC 제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및 중앙-지방 할당체계 기반의 실효적 관리수단으로 전환)
제30조는 총허용어획량(总可捕捞量)⁷⁾ 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총허용어획량(TAC) 설정과 중앙-지방 정부의 단계적 할당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어획량을 직접 통제하는 산출량 통제(output control) 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음
- 이는 어획량을 수산자원의 자연증가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선언적 제도를 실효적 규제로 강화한 것임

7) 중국 어업법에서 사용된 ‘总可捕捞量’은 직역시 ‘총허용포획량’에 해당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으로 번역하여 사용함

- (어선 및 어구에 대한 통제지표 설정) 제31조는 어획능력이 수산자원 상태와 연계되도록 하는 통제지표 관리체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 특히 어선의 건조와 개조가 정부의 관리지표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어업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전적 관리·통제 기반을 제도화하였음
- (어선 안전·운영·데이터 식별을 위한 통합 규정) 제34조와 제35조에서 어업활동의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선의 안전을 위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제34조는 기존의 허가 기반 어업관리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중형 어선에 대한 작업일지 작성 의무를 강화하고, 기록 범위를 어획량 중심에서 전재·구매·판매 정보까지 확대하였음
 - 또한 2013년 어업법에서는 작업일지의 보존 규정이 없었으나, 2025년에는 최소 2년 보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어획-전재-유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체계의 핵심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35조에서 어선의 항행 적합성 확보, 안전 설비 구축, 어선원 배치, 보험 가입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였음

■ '감독 및 관리' 장(章) 신설과 감독·집행 기능 확대

- 2025년 개정된 중국 「어업법」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감독 및 집행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임. 이는 중국이 어업 관리와 감독·집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중국 「어업법」에 신설된 제5장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53조	어업 집행기구의 감독 검사 강화 및 위법 행위 조사 처리 의무
제54조	해경 기구의 어업 감독 검사 권한 및 조치 규정
제55조	어업 집행 인원의 감독 검사 시 집행 규범 및 절차 명시
제56조	선박의 입출항 시 보고 및 관리 강화, 원양 및 외국 선박의 지정 항구 이용 및 어획물 추적 관리 도입
제57조	원양어선의 출입국 시 검역·검사 의무화
제58조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연안국 감독·검사 시행 명문화
제59조	외국 국적 어선의 중국 항만 입항 및 하역 시 승인 및 검사 의무화, IUU 어업 가담 어선의 입항 금지
제60조	어업 신용 체계 구축 및 신용 기록 제도 수립
제61조	어업 집행 기관 및 직원의 어업 경영 참여 금지
제62조	어선과 상선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감독기관 간 협력 강화
제63조	어업 집행기관과 해경 및 관련 부서 간 협동 집행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강화
제64조	「어업법」 위반 행위 신고 권리 명시 및 신고 처리 의무 규정

자료 : 중국 2025년 어업법(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어업 현장 단속 권한 강화) 제53조는 현장 검사, 승선 검사, 항행 정지, 출항 금지, 어선 및 어획물 압류 등 행정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해상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항만 단계에서는 제56조를 통해 입출항 보고 의무와 지정항만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외국 어선 및 원양어선에 대해 지정항만 이용을 의무화함
 - 이를 통해 항만 단계에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함
- 또한 제63조는 어업집행기관, 해경기관 및 관계 부처간 협동 집행 체제와 정보 공유를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 통합적 집행 구조를 구축하였음

■ 불법행위 신고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기반 관리체계 확대

- 제64조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 「어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어업 집행 기관 또는 해경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이는 단속 기관 중심의 감시체계를 보완하여 시민 참여 기반의 다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제도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사·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이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집행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어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체계의 대폭 강화

- 2013년 어업법 제5장 ‘법적 책임’이 기본적 행정벌 중심의 사후 제재 체계였다면, 2025년 제6장 ‘법적 책임’은 벌금 상한의 대폭 인상, 규제 대상의 공급망 전반 확대, 위반유형의 세분화, 형사책임 연계 강화를 통해 감독·집행 체계와 결합된 고강도 사전 억제형 체계로 전환되었음
-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벌금 상한의 대폭 상향임
 - 2013년 「어업법」은 벌금 수준이 낮고, 무허가 어업도 일반적으로 5만 위안 이하에 머무르는 등 기본적인 행정벌과 허가취소·조업정지 중심의 제재 체계였음
 - 2025년 개정법은 이를 획기적으로 상향하여 무허가 어업의 경우 최대 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어구 및 어선의 몰수까지 가능하게 하여 벌금 상한과 재산상 제재를 크게 강화함
- (규제 대상 확대) 개정법은 처벌 대상을 기존의 어업인 및 어선 중심에서 벗어나, 운송 가공·판매 등 유통 단계의 간접 행위자까지 확대하였음

- 제73조는 불법 어획물의 운송, 가공, 판매 등에 대해서도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반행위 유형의 세분화) 개정 「어업법」은 기존에 규율이 미흡했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대폭 확대·강화하였음
- (무등록·무표식 어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선박 증서, 선적항, 선명·선호가 없는 ‘3무 어선’이 어획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획물, 위법 소득, 어구 및 어선을 몰수하고, 어선 가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2조)
- (위반유형 세분화) 허가 또는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였으며(제68조) 어선의 안전 통신 항행정보 데이터를 변조, 은폐,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75조 제4호)
- (유통지원 행위자까지 확대된 제재 구조) 불법 어업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금지 어구의 제조·판매, ‘3무 어선’ 또는 금어기·금어구 위반 어선임을 인지하고도 유류 등 지원, 전재 및 판매 등에 가담한 경우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제73조)
- 이처럼 2025년 「어업법」 제6장은 제65조부터 제86조까지 조문이 세분화되어 있어, 유형별 맞춤형 제재 체계가 2013년 어업법보다 훨씬 정교해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 중국 어업법 개정 전후의 처벌체계 비교

구분	2013년 어업법	2025년 어업법
벌금(행정벌)	- 벌금 수준 전반적으로 낮음 - 무허가 어업 일반적으로 5만 위안 이하 - 상한 규정이 제한적	- 벌금 상한 대폭 상향 - 무허가 어업 최대 200만 위안 - 유통 관련 행위자 최대 10만 위안
행정처분	- 어업허가 취소, 조업정지 등 기본적 제재 중심 - 어구·어획물 몰수 일부 규정 존재	- 조업정지, 허가취소, 몰수 범위 확대 - 어선·설비까지 몰수 가능 - 출항금지, 항행정지, 승선검사 등 현장 권한 강화
형사처분 연계	- 형사처벌 연계 규정 존재하나 제한적 - 중대한 위반 시 형법 적용	- 형사처벌 연계 명확화 - 불법조업, 외국수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 강화
규제 대상 범위	- 주로 직접 행위자 중심 (어업인, 어선)	- 간접 행위자 포함 확대 (운송·가공·판매 등 유통 단계)
위반행위 유형	- 무허가 어업 등 전통적 위반 중심	- 3무 선박, 불법 개조, IUU 관련 행위 신설·구체화
집행 방식	- 사후 처벌 중심	- 사전 예방 + 실시간 통제 + 사후 처벌 결합

자료 : 중국 2013년 어업법과 2025년 어업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중국 「어업법」 개정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 국제어업 규범과의 정합성 강화 및 제도 전환

- 이번 「어업법」 개정은 중국이 국제 어업 규범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항만국조치협정(PSMA)」 가입 이후 지정항만 제도, 입출항 관리, 어획물 추적관리(traceability) 등 관련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IUU 어업 대응 및 수산물 공급망 관리 흐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나아가 중국은 PSMA 가입과 국내 제도 정비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 어업 거버넌스 및 IUU 어업 관련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산물 공급망 관리와 추적성 체계 강화

- 개정 「어업법」은 어획-항만-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추적성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단순히 중국 국내 어업의 관리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산물 무역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인증, 추적성 기준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특히 EU 등 주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요구하는 합법성·추적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수산물의 대외 시장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수산물 수출 과정에서의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원양어업 관리 강화와 산업 확대 전략의 병행

- 개정 「어업법」은 중국 원양어업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중적 정책 구조를 보여줌
 - 포획허가제 강화, 작업일지 의무화, 지정항만 등은 원양어업 활동 전반을 정밀하게 통제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줌
- 반면 2025년 「어업법」 제39조는 국가가 원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지원하고, 주변 인접국과의 어업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8) 원문은 다음과 같음. 第三十九条 国家采取措施鼓励、扶持远洋渔业的可持续发展, 加强与周边邻国渔业协作, 共同养护渔业资源

- 이는 2013년 「어업법」 제21조⁹⁾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발전을 장려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단순한 산업 확대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지속가능성과 국제 협력 요소를 결합한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동시에 중국 원양어업의 제도권 내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IUU 어업 억제와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원양어업의 운영 구조와 경쟁 환경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첫째, 중국은 작업일지, 어획기록,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제 수산자원 평가와 어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약 2,500~3,000척 규모의 중국 원양어선에서 축적되는 조업 데이터는 향후 국제 수산자원 평가 및 국제어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이번 정책 변화는 원양어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 전략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제 수산물 시장과 해외 조업 환경에서 국가간 경쟁 구조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 규범 변화와 원양어업 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임

■ 중국의 어업 감독·집행 체계 강화와 역량 고도화

-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이 어업관리와 감독·집행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임
- 어업 집행기관이 현장검사, 승선검사, 항행정지 명령, 어선·어획물 압류 등 감독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해경과의 협력 및 공동 집행 체계를 명문화하여 기관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음
- 또한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위법행위 신고 권리와 관계 기관의 조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고 기반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점은 민간의 신고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집행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업 활동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장치로 평가됨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

9) 원문은 다음과 같음. 第二十一条国家在财政、信贷和税收等方面采取措施，鼓励、扶持远洋捕捞业的发展，并根据渔业资源的可捕捞量，安排内水和近海捕捞力量。

한국 어업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 중국 「어업법」 개정과 어업관리 패러다임 변화

- 이번 중국 「어업법」 개정은 기존의 생산 확대 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 보호, 데이터 기반 관리, 감독·집행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총허용어획량(TAC), 작업일지, 지정항만 제도, 어획물 추적관리 등 국제 어업 규범과 연계되는 관리 요소를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원관리와 공급망 관리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 어획량 관리, 어획물 추적성(traceability), 데이터 기반 자원평가 등 관리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근해 어업 관리체계의 고도화 필요성

-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원관리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
- 다만 연근해어업에서 조업정보와 어획정보가 주로 안전관리와 행정관리 중심으로 수집·운영되고 있어, 자원평가, 어획량 관리, 공급망 관리 등과 연계된 통합적 데이터 활용체계 측면에서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업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나, 이는 안전조업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원관리 및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체계와의 연계는 제한적인 상황임

■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체계 구축 방향

- 국제적으로는 어획량 보고, 어획물 추적관리, 데이터 기반 자원평가 등이 어업관리의 주요 요소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번 「어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 관리 요소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역시 국제 규범의 직접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시장 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의 단계적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어획정보의 수집·관리·활용 체계 간 연계성 강화, 자원관리와 데이터 관리 간 제도적 연계 확대, 어획보고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함
-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부록: 2025년 중국 「어업법」의 조문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46조(종묘 및 포란어 보호)
제2조(적용 범위)	제47조(개발사업 영향평가 및 보호조치)
제3조(어업 발전 원칙)	제48조(수자원 이용과 생태조절)
제4조(어업 생산 정책 방향)	제49조(매립 금지)
제5조(정부의 계획 반영 의무)	제50조(공사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보상)
제6조(어업 행정체계)	제51조(수역 환경 보호)
제7조(감독관리 체계)	제52조(멸종위기종 보호)
제8조(과학기술 진흥)	◆ 제5장 감독 관리
제9조(어업인 자원 및 사회보장)	제53조(감독·집행 권한)
제10조(안전생산 의무)	제54조(해경의 감독 권한)
제11조(협회 및 보험)	제55조(집행 절차 및 신분)
제12조(국제협력)	제56조(어항 입출항 관리 및 지정항만)
제13조(외국인·외국어선 관리)	제57조(원양어선 출입국 관리)
제14조(포상 및 장려)	제58조(외국어선 항만국 통제)
◆ 제2장 양식업	제59조(외국어선 입항 및 하역 규제)
제15조(양식업 발전 장려)	제60조(어업 신용체계)
제16조(양식 수역·갯벌 계획)	제61조(공무원 이해충돌 금지)
제17조(양식종 제도)	제62조(해상 안전 협력)
제18조(양식 분쟁 처리)	제63조(기관 간 협력집행)
제19조(양식권 보상)	제64조(신고제도)
제20조(양식기지 보호)	◆ 제6장 법적 책임
제21조(종자자원 보호체계)	제65조(무허가 양식 처벌)
제22조(품종 개발 및 허가)	제66조(종묘 생산 위반 처벌)
제23조(종묘 검역)	제67조(외래종 관리 위반 처벌)
제24조(종묘 수출입 관리)	제68조(어선 건조·개조 위반 처벌)
제25조(기술지도 및 방역)	제69조(무허가 포획 처벌)
제26조(품질 안전 관리)	제70조(허가증 위조·양도 처벌)
제27조(환경 보호 의무)	제71조(원양·타국 수역 위반 처벌)
제28조(생산기록 의무)	제72조(무등록 어선 처벌)
제29조(외래종 관리)	제73조(불법 지원행위 처벌)
◆ 제3장 포획업	제74조(기록·표식·입출항 위반 처벌)
제30조(TAC 및 총허용어획량 제도)	제75조(안전 장비 위반 처벌)
제31조(어선·어구 통제지표)	제76조(종자자원 보호 위반 처벌)
제32조(포획허가제)	제77조(폭발·독·전기 어업 처벌)
제33조(허가 요건)	제78조(금지어구·금지어구 위반 처벌)
제34조(허가조건 준수 및 기록의무)	제79조(개발사업 환경위반 처벌)
제35조(어선 안전 및 장비 기준)	제80조(오염 및 유해물질 처벌)
제36조(어선 검사제도)	제81조(외래종 방류 위반 처벌)
제37조(불법어선 금지 및 지원 금지)	제82조(외국어선 불법어업 처벌)
제38조(어항 관리)	제83조(행정처분 및 즉결처분)
제39조(원양어업 및 국제협력)	제84조(처벌 감면)
◆ 제4장 어업 자원 보호	제85조(공무원 책임)
제40조(중요 어업수역 보호)	제86조(민·형사 책임)
제41조(종자자원 보호구)	◆ 제7장 부칙
제42조(종자자원 관리 및 주권)	제87조(용어 정의)
제43조(자원 증식 및 복원)	제88조(레저어업 관리)
제44조(금어구·금지어구 제도)	제89조(시설양식 적용)
	제90조(시행일)